

의안번호	제 385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7월 일 (제 282 회)

**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
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영웅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7월 일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영웅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6월 일

발 의 자 : 박영웅·권광택·박종갑·이영복·
심홍섭·민경환·정운숙 (7인)

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고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지역전략산업의 정의 명확화(안 제2조)
- 나.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(안 제5조)
- 다.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추가(안 제11조, 안 제12조)
- 라.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조항 신설(안 제15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예산조치 :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

7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전략산업”이라 함은“을 ““지역전략산업”이라 함은“으로, “지역 산업으로서“를 “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“로, “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“를 “제11조제1항에 따라“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산업자원부“를 “지식경제부“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을 “도지사의 책무“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번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의“를 “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“으로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의 “제공을“을 각각 “제출을“로 한다.

제5조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
9. 국제공동연구개발과 협력사업

제8조제1호 중 “유관기관에”를 “유관기관을”로, “전담기관을”을 “전담기관으로” 한다.

제11조 중 제7호를 제8호로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3항 중 제3호를 제4호로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변호사, 변리사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

제12조제6항 중 “전략산업팀장”을 “전략산업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비밀의 누설금지)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,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<u>전략산업</u>”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<u>지역 산업</u>으로서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<u>첨단기술 및 첨단제품</u>”이라 함은 「산업발전법」 제 5조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“<u>지역전략산업</u>”이라 함은 ----- ----- <u>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</u>으로서 ----- <u>제11조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지식경제부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책임과 의무) ①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자체적인 연구개발 강화, 산·학·연관 협력 증진,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4조(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) ①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략산업 지원사업) ①(생략)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8. (생략)

제4조(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) ①---
----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 제출을 -----.

④----- 제출을 -----
-----.

제5조(전략산업 지원사업) ①(현행과 같음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

9. 국제공동연구개발과 협력사업

10. (현행 제8항과 같음)

제8조(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·운영)

①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기능) (생략)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7. (생략)

제12조(구성) ① ~ ③(생략)

1. ~ 2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

④ ~ ⑤(생략)

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·운영)

①-----

----- 유관기관을 -----
전담기관으로 -----.

제11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

8.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12조(구성) ① ~ ③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변호사, 변리사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

4.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④ ~ ⑤(현행과 같음)

⑥-----
-----,
----- 전략산업업무 담당과장 -----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5조(실비보상 등) (생략)</p> <p>제16조(포상) (생략)</p> <p>제17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5조(비밀의 누설금지) 위위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16조(실비보상 등) (현행 제5 조와 같음)</p> <p>제17조(포상) (현행 제16 조와 같음)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(현행 제7 조와 같음)</p>
--	---

관 계 법 령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1조 (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
2.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(集積)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
4.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

3.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4.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4.22]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